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연구관리 규정

제정 2006. 12. 20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예규 제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수행연구”라 함은 연구원에서 자체 확보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를 말한다.
2. “공동수행연구”라 함은 연구원 이외의 관련연구기관 및 대학 등의 기관 또는 외국과의 협의에 의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원의 연구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원내 연구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연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연구종합계획 수립 및 연구결과의 종합평가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아래에 자체 원내연구심의위원회(이하 “원내위원회”라 한다)와 보건, 축산, 환경 각 분야별 분과 위원회를 둔다.

제5조(기능) ① 원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장기연구계획 등 연구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사업 계획 및 결과의 심의·평가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외 원내위원회에서 위임된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사업 계획 및 결과의 심의·평가에 관한 사항
2. 연구사업의 추진 사항
3. 기타 분과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원 및 임기)

① 원내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부장, 가축위생시험소장과 각 실·과장으로 한다. 보건 및 환경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연구부장, 축산물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가축위생시험소장이 되며 각 분과 위원은 해당분야의 실·과장 및 연구사 등 2~3명으로 구성한다.

기타 필요시에 해당 분과위원회 및 인원을 구성하여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운영) ① 원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원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 회의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과위원회 회의에 혁신연구기획팀원을 배석시킬 수 있다.

제8조(연구과제의 심의, 연구계획의 변경, 진도 및 결과의 평가) ①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받아 연구과제를 심의한다.

1. 연구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행 전 연도 9월 말일까지 제출하고, 연구사업 세부시행 계획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행 전 연도 1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된 연구과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각 분과위원의 심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우수하거나, 수정·보완이 필요한 보통이상의 과제를 1차 원내 심의를 통해 선정하며, 선정된 과제는 2차 원외 심의 평가를 거쳐 최종과제로 확정한다.
3. 외부 공동 수행 연구과제는 주관 부서의 연구추진 일정에 따른다.
- ② 각 연구과제의 책임연구자는 연구수행 중에 연구계획의 변경이나 수정이 필요한 때에는 분과위원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 ③ 분과위원장은 분기별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연구진행상황은 1분기 및 3분기 보고서 작성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중간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2. 4분기의 연구진행 상황 보고는 보건환경연구원보 투고 및 발간규정의 연구논문 제출 양식에 따라 작성된 연구사업 최종 결과보고서로 대체하며, 최종결과보고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요약보고서를 함께 작성하여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2년 이상 계속 되는 연구과제로 다음해에 마무리되는 연구보고서 작성에 관해서는 원내위원회에서 따로 정한 일정에 의한다.
- ④ 분과위원은 연구사업 최종결과보고서에 대한 연구결과 평가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완료 논문에 대한 최종 평가점수 산정은 원외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40퍼센트 반영한다. 평가 시기는 다음해 2월 중으로 한다.

제9조(의견청취) 원내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제8조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과제의 책임연구자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보고 및 조치) ① 분과위원장은 과제의 책임연구자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① 원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각각 간사 1인을 둔다.

- ② 원내위원회의 간사는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각 주과(실)의 장으로 한다.
- ③ 간사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을 보좌하고, 원내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연구결과의 발표 및 투고) ① 모든 연구결과는 보건환경연구원보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4조 2호의 종합 심의평가 결과 보통이하의 평가 시에는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연구결과를 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연구부장 또는 가축위생시험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요 사항의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원장은 연구결과를 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발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게재료 및 발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3 장 원외 연구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원의 연구심의위원회 구성) 다음해 수행 예정으로 공모하여 수립된 연구계획 및 연구결과에 대한 외부평가 등을 위하여 원장은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원외 연구심의위원회(이하 “원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제14조(기능 및 임기) 원외 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모 연구사업의 심의·평가에 관한 사항
2. 연구사업결과의 종합심의·평가에 관한 사항
3.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5조(회의운영) 회의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개최되 상반기는 전년도 연구사업결과의 종합심의·평가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하반기는 다음해에 수행 예정으로 공모된 연구사업 계획의 심의·평가를 별지 제7호의 서식에 의거 작성한다.

제16조(수당 및 여비지급) 원외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나 연구계획 및 연구결과 등을 평가한 위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연구실적 등의 평가 및 평가 성적의 반영

제17조(연구실적 등의 평가) ① 원장은 연구실적 등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당해 년도 중에 제출된 최종연구결과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 시기 및 배점기준 등은 제8조 4항에 따른다.

제18조(평가 성적의 반영) ① 원장은 우수 연구자에 대한 평가 성적을 근무성적평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 조정 시 반영할 수 있으며, 각종 포상 및 해외기술훈련 대상자 추천 시 우선적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② 평가 성적의 유효기간은 평가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19조(부실연구자에 대한 조치) 원장은 연구를 수행하지 못한 실험부서의 연구자, 또는 수행한 과제의 평가 성적이 아주미흡하거나 지연되는 등 현저히 저조 하는 부실한 해당 연구부서의 연구자에게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위원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사업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제4조 및 제13조에 의하여 원내 또는 원외 연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연구사업 계획서

□ 수행부서

연구분야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구성원)												※ 참여율(%)기재
총 연구기간												
세 부 추 진 내 용												
배경 및 목적												
연구 내용 및 방법												
추진 일정	내용	월 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참고문헌												

[별지 제2호 서식]

연구사업 세부실험 시행 계획서(중간보고서 겸용)

1. 제목

2. 연구목적

3. 연구개요

가. 연구기간 :

1) 문헌조사 :

2) 시료채취 및 분석 :

- 6~9월 : 월 ○○회,

- 기타 : 월 ○○회

3) 보고서 작성 :

나. 조사지점 :

다. 조사항목 :

※ 조사항목은 필요에 따라 추가

4. 연구구성원 : 책임 연구자, 공동연구자

직 책	성 명	임 무
책임연구자 (연구관/연구사)		
공동연구자 (연구관/연구사)		
공동연구자 (연구관/연구사)		

5. 연구내용

6. 세부추진일정

사업내용(예)	2000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문헌조사												
현장조사												
시료채취 및 분석												
보고서 작성												

7.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8. 기타사항

[별지 제3호 서식]

연구사업 과제선정 평가서(원내 심의 평가용)

연구분야	
연구과제명	
수행부서	
연구책임자 (성명/소속)	
총 연구기간	
평가점수	

위 연구계획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평가자 소속 :
직 위 :
성 명 :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

I. 연구사업 과제평가

평가항목	배점	평가결과(“○”)표시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 이 연구의 필요성 및 적절성은?	10	10	9	7	5	4
2. 연구목표 설정의 명확성은?	10	10	9	7	5	4
3. 연구과제의 공익성 및 시민생활 기여도는?	10	10	9	7	5	4
4. 연구과제의 창의성은?	10	10	9	7	5	4
5. 연구방법의 타당성은?	10	10	9	7	5	4
6. 연구목표의 달성 가능성은?	10	10	9	7	5	4
7. 연구결과와 관련분야 활용도 및 기대효과 정도는?	10	10	9	7	5	4
8. 연구과제의 전문성 및 학술적 가치는?	10	10	9	7	5	4
9.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인적구성의 적합성은?	10	10	9	7	5	4
10. 연구내용 및 방법을 고려할 때 과제 수행일정의 적절성은?	10	10	9	7	5	4
평가점수	(합계100)					

※ 표기는 해당란에 ○으로 표시하시고 정정 시에는 반드시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등급	아주우수 (90점이상)	우수 (89-80)	보통 (79-70)	미흡 (69-50)	불량 (50점미만)	선정 기준
평가점수						우수이상 : 선정 보통 : 재심의 미흡이하 : 선정제외

II. 연구과제 수행 시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

※ 기타 의견

[별지 제4호 서식]

연구사업 진행상황 보고서(1, 3분기)

과제명 (연구책임자)	세 부 추 진 내 역		
	계 획	실 적	진도율(%)
추진상의 문제점			

[별지 제5호 서식]

연구결과물 심의 평가서(원내 심의 평가용)

분 야							
과 제 명							
수행부서			협조부서				
연구책임자							
평가항목	구 분	평 가 결 과					평가 점수
		아주우수 (10)	우수 (8)	보통 (6)	불량 (4)	아주불량 (2)	
1. 연구수행도 - 연구시기의 적시성 - 연구기간의 적절성 - 참여인력의 능력발휘도 2. 연구수행 방법 - 접근방법의 합리성 - 연구방법의 타당성 - 시행계획서와의 부합성 - 독창성 및 과학기술적인 수준 3. 연구결과 - 연구목적의 달성도 - 연구결과물의 질적 수준 - 연구결과물의 실용성 및 기여도							
종합 점수	평가등급	아주우수 95점 이상	우 수 80점 이상	보 통 60점 이상	미 흡 40점 이상	아주 미흡 20점 미만	
종합의견							
평 가 자	소속 및 직위			성명	(인)		

* 종합점수 : 각 항목별 평가점수의 합

[별지 제7호 서식]

연구사업 과제선정 평가서(원의 심의 평가용)

연구과제명 :

I. 연구과제 평가서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결과(“○”)표시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 연구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 가능성?	20	20	18	16	14	12
2. 연구과제의 시민생활 기여도는?	20	20	18	16	14	12
3.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도?	20	20	18	16	14	12
4. 연구과제의 창의성은?	20	20	18	16	14	12
5. 연구과제의 전문성 및 학술적 가치는?	20	20	18	16	14	12
평 가 점 수	(합계100)					

평가등급	아주우수 (95점이상)	우수 (94-85)	보통 (84-75)	미흡 (74-65)	불량 (65점미만)	선정 기준
평가점수						보통이상 : 선정 미 흡 : 재심의 불 량 : 선정제외

II. 연구과제 수행 시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

※ 기타 의견

위와 같이 평가 함
평가자 : (인)

[별지 제8호 서식]

연구결과물 심의 평가서(원의 심의 평가용)

연구과제명 :

I. 평가표

평 가 항 목	배점	평과결과(“○”)표시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 연구결과물의 독창성?	20	20	18	16	14	12
2. 논지 전개의 타당성?	20	20	18	16	14	12
3. 연구결과물의 시민생활 기여도는?	20	20	18	16	14	12
4. 연구결과물의 정책 기여도?	20	20	18	16	14	12
5. 연구결과물의 전문성 및 학술적 가치는?	20	20	18	16	14	12
평 가 점 수	(합계100)					

평가등급	아주우수 (95점이상)	우수 (94-85)	보통 (84-75)	미흡 (74-65)	불량 (65점미만)	비 고
평가점수						

II. 심의 의견

위와 같이 심의 평가 함

200 년 월 일

심의 평가 위원 : (인)

[별지 제9호 서식]

연구사업 최종결과 요약 보고서

제목 :

보건환경연구원 ○○○과

연구목적 및 의의

1. 연구개요

- 연구기간 :
- 연구대상 :
- 시험내용(항목) 및 방법 :

2. 연구결과

3. 연구결과의 활용에 대한 건의

- 문제점
- 대책 및 건의

4. 기대효과